(비공식 번역본)



투자청(BOI) 공고 No. Sor. 7/2561

스마트시티(Smart City) 개발 추진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Smart City development project)의 개발 및 관리를 촉진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여 태국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대의 품질과 기준을 높이기 위해;

투자진흥법 제 16 조 2 항(1977 년:B.E,2520)에 의거하여 투자청(BOI)은 2014 년 12 월 3 일자 투자청 No. 2/2557 공고에 첨부 된 목록의 범주 7 에 조건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 조건, 권리 및 특권을 구성하여 공고한다.

범주	조건	권리 및
		특권
7.9.3 스마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구 사업	1. 등록 자본 51% 이상의 주식을 반드시 태국 국민이 보유해야한다. 2. 사업 지역에 스마트 이동용 기기(Smart Mobility), 스마트 피플(Smart People), 스마트 리빙(Smart Living), 스마트 경제(Smart Economy), 스마트 공공경영(Smart Governance), 스마트 에너지(Smart Energy) 및 스마트 환경(Smart Environment)의 7 가지 시스템을 반드시 모두 제공해야한다. 3. 신청자는 BOI 투자 특권을 신청하기 전에 스마트시티 개발을 직접 담당하는 조직이나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4. 방콕(Bangkok)과 사뭇쁘라칸(Samut Prakarn)은 사업(project)의 추진 대상이 아니다. 5. 사업의 총 토지 면적은 반드시 500 라이(1rai =1600m²) 이상이어야한다.	A2
	6. 공장 면적은 반드시 총 토지 면적의 60% 이상,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00 라이가 넘는 토지를 보유한 사업은	

예외로 하며, 그 조건은 투자청(Board)의 승인에 의거하여야 한다.

## 7. 기타 조건:

- 7.1 주요 도로 기준:
- 토지의 면적이 1,000 라이가 넘는 경우, 표고 14m 이상으로 4 차선 도로에 접하고 우선통행로 30m 가 확보되어 반드시 교통안전지대(traffic island)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도로 양쪽에 너비 2m 로 포장되어야 한다. 갓길(road shoulders)은 비상 시 주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한다.
- 토지의 면적이 500~1,000 라이인 경우,표고 7m 이상으로 2 차선 도로에 접하고 우선통행로 20m 가 확보되어 반드시 교통안전지대(traffic island)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도로 양쪽에 너비 2m 로 포장되어야 한다. 갓길(road shoulders)은 비상 시 주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한다.
- 7.2 공급 도로 기준(Feeder road standard): 노면은 반드시 8.50m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양쪽에 너비 2m 의 갓길(road shoulders)이 있어야 한다.
- 7.3 폐수 처리 시스템은 폐수의 품질과 법에 규정된 폐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처리된 폐수 저수지도 반드시 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 7.4 폐수 배수시스템과 빗물 배수시스템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 7.5 투자청(Board)이 승인한 적절한 폐기물 수집, 보관 및 폐기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 7.6 해당 지역을 사용하는 공장은 천연자원 및 환경정책기획국의 전문위원회가 승인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대상 산업 및 금지 산업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7.7 공공 설비 시스템(public utility systems) 예를 들어 전기, 수도, 산업용수공급, 전화 및 우편 서비스는 반드시 산업 지역의 공장용으로 충분해야 한다. 7.8 총 면적의 약 25% 또는 투자청(Board)이 승인한 지역의 토지 개량은 공공설비시설(public utilities)이 서비스를 준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업추진허가(promotion certificate) 발급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7.31 스마트시티 1. 등록 자본 51% 이상의 주식을 태국 국민이 반드시 보유해야 개발 한다. 2. 광통신 및 공용 와이파이(WiFi) 같은 스마트 시스템을 지원하는 통신 기반시설 (infrastructure)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다. 3. 스마트 환경 시스템(Smart Environment system)과 스마트 이동용 기기(Smart Mobility), 스마트 피플(Smart People), 스마트 리빙(Smart Living), 스마트 경제(Smart Economy), 스마트 공공경영(Smart Governance) 및 스마트 에너지(Smart Energy)의 6종류의 시스템 중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다. 4.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에 연결되는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5. 신청자는 BOI 투자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스마트시티 개발을 직접 담당하는 조직이나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6. 지역별 개발 목표에 맞춰 핵심성과지표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반드시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7. 반드시 지역사회에서 공청회를 조직하고 공공 참여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8. 법인세 면제 대상 수익은 반드시 스마트시티 지역의 스마트
  - 추진사업(project)이 7 가지 스마트 시스템 대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 수익이어야 한다.

9. 투자혜택/장려책(Incentives)

	모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 추진사업(project)이 7 가지 스마트 시스템 대한 서비스를	A3
	모두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10.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 EEC) 지역에	
	위치한 사업(project)은 법인세 면제 기간이 종료된 후 5 년간	
	법인세를 50%를 추가로 감면 받게 된다.	
7.32 스마트시티	1. 스마트 이동용 기기(Smart Mobility), 스마트 피플(Smart	
시스템 개발 사업	People), 스마트 리빙(Smart Living), 스마트 경제(Smart	
	Economy), 스마트 공공경영(Smart Governance), 스마트	
	에너지(Smart Energy) 및 스마트 환경(Smart Environment)등	
	투자청(Board)이 규정한 스마트시티 시스템의 서비스를 반드시	
	1 개 이상 개발, 설치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2. 반드시 스마트시티 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청(Board)이나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이 승인한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smart	
	city development project)의 일부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권리와 특권이 주어진다:	
	- 사업(project)이 7 개의 스마트 시스템 모두를 제공하는	A2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의 일부인 경우;	A2
	- 사업(project)이 7 가지 스마트 시스템 중 일부를 제공하는	A3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의 일부인 경우.	AS
	4. EEC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는 법인세 면제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5 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 진다.	

이 공고는 현재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8년 12월 28일 공고

제네랄 쁘라윳 찬오차 (쁘라윳 찬오차) 투자청(BOI) 의장